

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[2023. 3. 7.(화)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3. 7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년 3월 7일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2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1월 17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0일

2. 개정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이 2020. 12. 22.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 - “주관부서” 정의 추가
- 나. 정보공개 주체 정비(안 제4조, 안 제5조)
 - 정보공개주체 : 구청장 ⇒ 집행기관의 장
- 다. 행정정보공표 용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(안 제5조)
 - 용어 수정 : 행정정보의 공표 ⇒ 정보의 사전적 공개

라.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0조)

-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 확대

: 7명 중 위촉직 4명 ⇒ 5명

마.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 규정 명시

-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
않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2조

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(2022.11.30. ~ 2022.12.20.) 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○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0. 12. 22.)에 따른
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제6항을 신설하여 “주관부서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
- 안 제4조, 안 제5조는 정보공개 주체를 “구청장”에서 “집행기관의 장”으로 정비하였으며, 안 제5조의 조문의 제목 또한 상위법령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“행정정보의 공표”에서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”로 변경함
-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2/3이상으로 확대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규정을 명시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(2020. 12. 22.)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안 제5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기존의 “행정정보의 공표”에서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”으로 변경하려는 하는 것은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행정정보의 공표”에서 “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며,

-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2/3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-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붙임1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(안 제15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
“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
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- 예상 소요 비용: 3,500천 원
 - 참석수당(매년): 약 3,500천 원(5명 * 70,000원 * 10회)

4. 작성자: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장 박순영

(담당: 임기제 행정8급 이영은 / ☎ 2600-6476)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-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-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-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